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. 5. 27 선고 2023가단160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담당변호사 김성진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석민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4. 4. 16.
판 결 선 고 2024. 5. 27.

주 문

- 피고와 C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2023. 1. 27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- 피고는 위 C에게 제1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. 1. 31. 접수 제4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을 상대로, “C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는 지급명령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4738)을 신청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지급명령’이라고 한다), 위 지급명령은 2015. 1. 6. 확정되었다.

나. 망 E(2018. 2. 14. 사망, 이하 ‘망인’이라 한다)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고 있었고,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자녀인 피고, F, G, 위 C이 있다(상속지분 각 1/4).

다. 피고, C 및 위 나머지 상속인들은 2023. 1. 27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피고는 2023. 1. 31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(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3. 1. 31. 접수 제4282호, 이하 ‘이 사건 등기’라 한다)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3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는바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

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(대법원 2007. 7. 26.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).

앞서 거시한 증거들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은 이 사건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1/4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이 원고 등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 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으나,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,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데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 협의는 취소되어야 하고,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학승

별지